



포항공과대학교

수신자 내부결재
(경유)

제 목 예산회계규정 개정 승인 요청

예산·회계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개정 목적: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개정 사항 반영
(예·결산 확정 시,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·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)

사립학교법 제29조(회계의 구분)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확정·집행한다.

1. 대학교육기관: 대학평의위원회의 자문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(이하 "등록금심의위원회"라 한다)의 심사·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·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.

2. 개정 내용:

현행	개정(안)
제9조(예산의 편성) ① 예산총괄부서장은 예산요구서를 종합, 심사, 조정하여 예산안을 작성한다. ② 총장은 예산안을 대학평의위원회의 <u>자문을 거쳐</u> 매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, 이사회는 매회계년도 개시 20일전까지 이를 심의·확정하여야 한다.	제9조(예산의 편성) ① 예산총괄부서장은 예산요구서를 종합, 심사, 조정하여 예산안을 작성한다. ② 총장은 예산안을 대학평의위원회의 <u>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·의결을 거쳐</u> 매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, 이사회는 매회계년도 개시 20일전까지 이를 심의·확정하여야 한다.
제10조(예산의 내용) ④ 예산의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이사회 회의록,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사본	제10조(예산의 내용) ④ 예산의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이사회 회의록,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<u>및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</u> 사본
제25조(결산확정 및 제출) 본 대학의 결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. 1. 연차결산서는 매 회계년도 종료후 50일 이내에 대학평의위원회의 <u>자문을 거쳐</u>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2. (생략)	제25조(결산확정 및 제출) 본 대학의 결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. 1. 연차결산서는 매 회계년도 종료후 50일 이내에 대학평의위원회의 <u>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·의결을 거쳐</u>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2. (현행유지)

3. 개정일: 승인일로부터 시행

붙임 예산회계규정 개정(안). 끝.

담당자

정예나 총장

08/02

김용민

시행 기획예산팀-1382 (2013.08.02) 접수

()

우 790-784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 31번지

/ <http://www.postech.ac.kr>

전화 054) 279 - 2405

전송 054) 279 - 3590

/ jeongyn@postech.ac.kr / 공개